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회원병원장

참 조 예방접종 담당부서

제 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-2162(2016.5.31)
3. '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'이 일부 개정(2016.6.1, 시행)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구분	개정전	개정후	비고
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장	질병관리본부장	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	제4조제2항
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	신청일로부터 <u>14일 이내</u>	신청일로부터 <u>15일 이내</u>	제9조제1항
예방접종 비용의 지급	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<u>지급</u>	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<u>15일 이내 지급.</u> 다만,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	제10조

붙임: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(제2016-81호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최명희 팀장 정교숙 국장 방성민 사무총장 김완배

시 행 : 기획정책 제 2016-192 ( 2016.05.31 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3 전송 02-705-921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cmh@kha.or.kr